

웅지세무대학교	입 학 전 형 관 리 위 원 회 규 정	문서번호	6-3-14(G)-0
		제정일자	05.01.03
		최근개정	23.03.22
		주관부서	입학홍보처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의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1., 2013.01.01.>

제2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특성에 맞는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개발
4. 입학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배분 등)
5. 입학정보의 개발과 홍보
6.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총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장 등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01. 2015.03.24., 2023.03.2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3.22>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개정 2010.03.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3.01., 2023.03.22>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10.03.01., 2023.03.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3.01.>

③ 위원장은 회의의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9.04.22.>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전원이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신설 2010.03.01.>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03.24. 2023.03.22>

~~제8조 삭제 <2010.03.01.>~~

부 칙 <1판-개정/시행 2005.01.03.>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10.03.01.>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3.01.01.>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15.03.24.>

규정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판-개정/시행/공포 2019.04.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판-개정/시행/공포 2023.04.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